

일본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현안 분석

권세진

서강대 대우교수
디지털정책연구소장

GLOBAL LEGAL ISSUES

일본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현안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ONTENTS

I. 배경	8
II. 경제안전보장추진법(1)	11
1. 입법 취지 및 구성	11
2.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법 제2장)	12
3. 사회기반 업무의 안정적인 제공 (법 제3장)	17
III. 경제안전보장추진법(2)	20
1. 첨단핵심기술의 개발지원 (법 제4장)	20
2. 비공개 특허출원 제도 (법 제5장)	23
IV. 국내 법제 시사점과 정책 제언	27
1. 국내 법제 및 비교분석	27
2. 시사점과 정책 제언	31
참고문헌	36

요약

1. 배경

-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하여 일본의 수출규제, 백신·보건안보, 공급망 위협 등 다양한 안보위협 등장과 국가경제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은 매우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경제안보 강화 추진함
- 日 정부는 경제안보 강화 목적으로 경제안전보장법안의 제정 추진을 발표하고, 2022년 2월 25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5월 11일 참의원 본회의 통과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주요내용

(1) 입법 취지 및 구성

-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과 관련 경제시책을 마련함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의 확보, 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에 관한 제도, 중요기술의 개발지원 및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 신설 등으로 안보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구성함

(2)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법 제2장)

- 국민의 생존이나 국민생활·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 물자의 안정적 공급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중요물자 지정, 민간사업자의 계획 인정 및 지원 조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특별 대책으로 필요한 정부조치를 제시함
- 중요물자 지정: 특정 중요물자를 정의하고 지정이 필요한 중요물자에 대한 기준 제시
- 공급 확보 계획: 특정 중요물자 등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대처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공급 확보 사업자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사업 지원
- 금융지원: 공급 확보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지정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요물자의 원활한 확보에 필요한 자금 대출
- 안정적 공급 확보 위한 정부조치: 특별한 대책 필요시 주무대신은 중요물자와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에 대해서 비축 그 밖의 공급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3) 사회기반 업무의 안정적인 제공 (법 제3장)

- 기간 인프라의 중요 설비가 일본 외부에서 행해지는 역할의 안정적인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개 분야에 중요 설비의 도입·유지 관리 위탁의 사전심사 제도 및 권고·명령 제도 도입함
- 사회기반 사업자 지정: 국민생활이나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사업 중 안정적인 제공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① 국민의 생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것 또는 ② 국민생활 혹은 경제활동에 광범위하거나 대규모의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회기반 사업자 지정
- 중요설비 도입에 관한 사전심사: 사회기반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중요설비의 도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해 중요설비의 유지관리 또는 조작 설비가 해외에서 행해지는 사회기반업무의 방해 행위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함

(4) 첨단핵심기술의 개발지원 (법 제4장)

-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관한 기본지침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자금 지원 등 실시함
-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우주, 해양, 양자, AI,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특정 중요기술을 상정하여 연구개발 및 그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관민협의회 설치 및 기금 지정
- 조사연구기관 육성: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를 특정핵심기술 연구기관에 위탁

(5) 비공개 특허출원 제도 (법 제5장)

- 안전보장상 민감한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 공개나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특허권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보전지정을 통한 공개유보와 외국출원 제한 등을 조치
- 비공개 대상 기술심사(2단계): 1차 심사에서 비공개 대상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후, 2차 심사에서 ①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의 정도, ② 발명을 비공개로 한 경우에 산업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발명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 검토
- 보전지정: 보전 대상 발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 취하 금지, 실시의 허가제, 발명내용 공개 금지, 정보의 적정 관리 등을 해야 함

- 외국출원 제한: 특허청의 1차 심사로 분류되는 기술은 일본에 우선적으로 출원해야 하며,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1국 출원 의무 부담여부 확인함

3. 국내 법제 시사점과 정책 제언

(1) 국내 법제 및 비교분석

- 근래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경제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공급망, 핵심기술, 주요 기반시설 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영역별로 기존 법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입법화를 추진함
- 대표적으로 2022년 2월 3일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과 향후 추진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이 있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과 日「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모두 경제안보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과 공급망 등을 강화하여 기술패권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첫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경제안보에 관한 시책을 공급망, 핵심기술, 인프라, 비공개특허제도 등 종합적이고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며 정부수반인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주관하도록 함. 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이에 기반을 둔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유출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하게 다루며, 이 법에 따른 공급망도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된 품목으로 한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임
- 둘째, 일본법은 공급망과 관련하여 중요물자와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희토류, 니켈 등 광물자원), 부품, 설비, 기기, 장치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그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법은 일본법에 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정의와 그 지정기준이 ‘경제안보적’ 특성과 고려가 다소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않음
- 셋째, 핵심기술 보호 및 통제 방식과 관련하여, 일본법은 AI, 양자기술, 핵기술이나 첨단 무기 기술개발 등 국익에 관련되는 특허를 비공개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통제와 전략기술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의 사전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 시사점과 정책 제언

-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기사다 총리 내각 출범과 동시에 국가아젠다로서 추진해온

‘경제안보전략’을 범부처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함

- 우리나라 경제안보 법제는 기존 산업안보 법제에 더해 추가적인 입법으로 구성되고 개별 영역에서 각기 맡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일적인 틀 아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의 정비가 우선 전제될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경제안보’ 용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나 경제안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화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함
- 경제안보는 산업정책, 공급망, 연구개발(R&D), M&A, 핵심인력, 외교, 통상, 수출통제, 정보수집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적·전방위적으로 운용하는 개념이므로 종합적인 접근체계가 필요함
-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도입된 ‘비밀특허제도’를 ‘국방상 필요한 발명’을 넘어 국가 핵심기술과 전략기술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14개 주요 인프라에 대한 중요 설비에 대해 사이버 공격 위험 등이 없는지 설비나 관리체제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 배경



-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하여 일본의 수출규제, 백신·보건안보, 공급망 위협 등 다양한 안보위협이 등장하고 국가경제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중국의 사드보복 및 배터리 필수광물(리튬·니켈·코발트 등) 가격 역대 최고치 요구,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외부충격은 국가산업·경제에 큰 위협임
-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공급망 재편을 놓고 양국이 충돌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
 -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고통을 겪던 중국 화웨이는 작년 매출이 30% 급감
 - 요소수, 희토류, 마그네슘, 리튬 등 해외의존 높은 중간재 1088개, 중국의존도 80% 이상 기업 3만 개사로 원자재의 산업 무기화 추진



대중 제재·경제 안보 강화

- **수출통제 개혁법(ECRA)**
- 경제안보 명분의 수출 통제, AI, 로봇, 바이오텍 등 신기술과 기초기술에 대한 대중 관리 강화
-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법(FIRRMA)**
- 중국 제조2025 겨냥,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권한 강화, 핵심기술 데이터 인프라 투자 규제
- **미국혁신경쟁법(안) (USICA)**
- 중국 견제 패키지 법안('21.6.8. 美상원 통과)
- **미국경쟁법(안) (ACA)**
- 반도체 산업 육성, 중국 관세 혜택 제한, 투자제한('22.4.26. 美하원 제출)



경제안보 법제 강화

- **중국의 수출규제법제 강화**
- 외국인투자법, 수출금지 제한 기술목록,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규정', '수출통제법' 등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 도입
- **희토류 관리조례 제정 의견 수렴 등**
- 희토류, 무인기, AI, 드론기술 등 전략자원과 핵심기술 보호('21.1)
- **반외국제재법 제정('21.6)**
- 외국의 중국 국민·기업 차별 조치에 자산압류, 블랙리스트, 거래 금지 등 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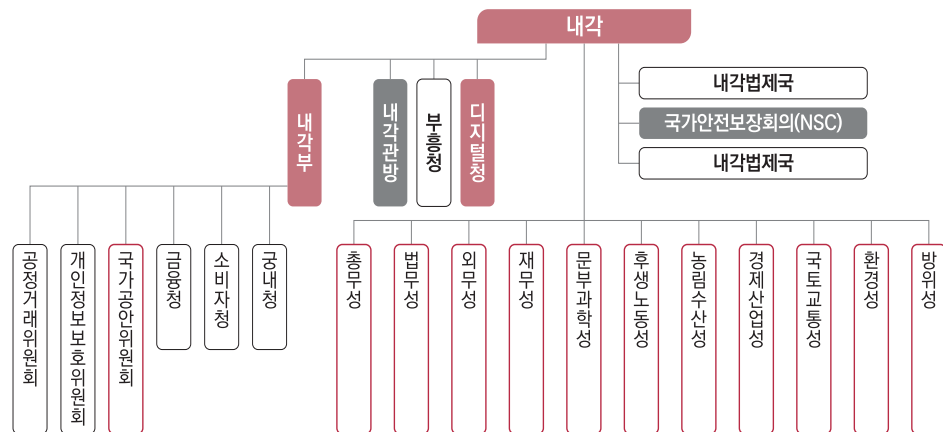
-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일본은 매우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경제안보¹⁾를 강화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위기를 안보력 강화의 기회로 삼으면서, 국방비 증액(세계 3위), 기밀정보

1) '경제안보'란 국가·국민의 안전확보, 즉 안전보장을 위한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음.

동맹인 ‘Five Eyes’ 진입과 탈중국 공급망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군사·경제 기밀 보호 법제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및 제정하고 있음²⁾

- 2021년 11월 14일, 日 정부는 경제안보의 포괄적인 강화 목적으로 경제안전보장법의 제정 추진을 발표하였고,³⁾ 2022년 2월 25일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하여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經濟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라 함)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⁴⁾ 2022년 4월 7일 중의원 본회의를 거쳐⁵⁾, 2022년 5월 11일 참의원 본회를 최종 통과함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0월 중점 과제인 ‘경제안보전략’을 위하여 내각부의 특명 담당대신에 ‘경제안보담당대신’(고바야시 다카유키씨(小林鷹之)) 직을 신설함⁶⁾
 - 경제안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각료회의인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를 별도 신설함

[그림 1] 일본 정부 조직도



2) 예를 들면, 2020년 6월 외환법을 개정하여 국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투자에 대해 지정산업 상장기업의 지분 취득 시 사전인도 강화(10%~1%), 보안에 중요한 사업의 이전 및 폐지, 비상장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등에 관한 통지 절차를 도입하였고, 2019년 6월 국가안보에 중요한 토지 등에 관한 거래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안보 요충지의 국토구역 지정,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통지제도 도입과 정부의 매입·수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大澤淳, 經濟安全保障の現在地かなり先細った推進法案, WEDGE Infinity, 2022.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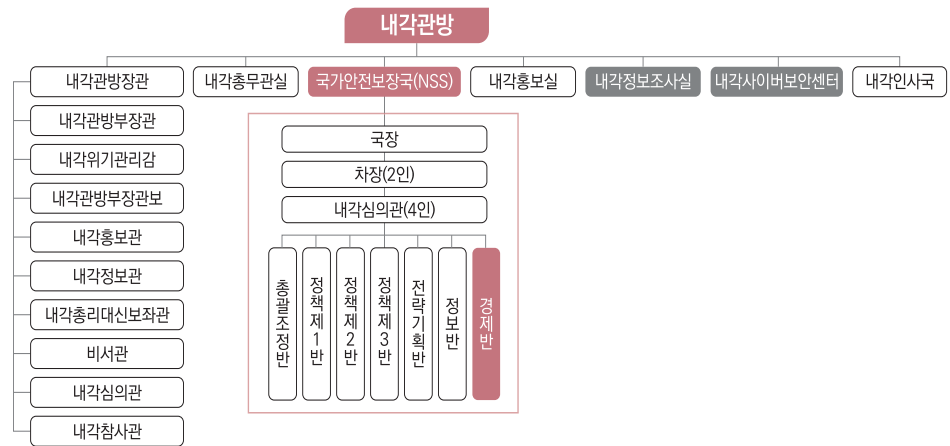
3)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2021년 11월 발족한 “경제안전보장법제에 관한 유식자회의” (이하 ‘유식자회의’라 함)의 논의를 거쳐 작성되었음.

4) 經濟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https://www.cas.go.jp/jp/houan/208.html> (방문일: 2022.3.28.)

5) 産経新聞, 經濟安保法案が衆院通過 立民など野党も賛成, 2022.4.7.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407-U3XB2FCURZK55FJ5CDLCRUAPMU/> (방문일: 2022.4.16.)

6)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https://www.cas.go.jp/index.html>) (방문일: 2022.4.5.)

[그림 2] 내각관방 조직도



※ 출처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p.5

-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간 기술패권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관련 법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수출규제를 하였던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대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도출 필요

II. 경제안전보장추진법(1)

1. 입법 취지 및 구성

(1) 입법의 취지

- 국제정세의 복잡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관해 이루어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함⁷⁾
-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방침을 책정함과 동시에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으로서 필요한 제도를 신설함(제1조)
 -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의 확보, 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에 관한 제도, 중요기술의 개발지원 및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 신설 등으로 안보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의 구성

- 동 법은 총 7장, 9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2장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제1절 안정공급 확보 기본지침 등(제6조-제8조)
 제2절 공급 확보 계획(제9조-제12조)
 제3절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법의 특례(제13조-제25조)
 제4절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법 및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제26조-제28조)
 제5절 특정 중요물자 등에 관련된 시장 환경의 정비(제29조-제30조)
 제6절 안정공급 확보 지원법인에 의한 지원(제31조-제41조)
 제7절 안정공급 확보 지원 독립행정법인에 의한 지원(제42조-제43조)
 제8절 특례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 중요물자(제44조-제45조)
 제9절 잡칙(제46조-제48조)
 제3장 특정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제49조-제59조)
 제4장 특정 중요기술 개발 지원(제60조-제64조)
 제5장 특허출원의 비공개(제65조-제85조)
 제6장 잡칙(제86조-제91조)
 제7장 벌칙(제92조-제99조)
 부칙

7) 법률안 제출이유 “일본의 안전보장은 방위, 외교,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각 분야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이며, 국제정세의 복잡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동반하여 경제안전시책의 추진이 긴급한 과제가 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본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제안전시책의 추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의 책무를 밝히는 동시에 경제안전시책의 기분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안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經濟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法律案・理由, 132면. <https://www.cas.go.jp/jp/houan/220225/siryou3.pdf>

(3) 기본방침과 국가책임 등

- 경제안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이 각의⁸⁾의 결정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제2조)
- 기본방침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음
 - ① 경제시책의 완전한 마련을 통한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② 중요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사회기반(인프라)의 안정적인 제공, 중요기술의 개발 및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안전보장의 확보에 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④ 그 밖의 경제시책의 완전한 마련을 통한 안전보장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
- 기본방침에 따라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국가의 책임과 중앙행정기관의 협력 의무 등을 규정함
- 이 법에 따른 규제조치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시행함(제5조)

2.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법 제2장)

(1) 기본지침, 중요물자 지정 등

- 물자마다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다르지만, 본 제도에 따른 조치가 일관된 기준으로 적절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한 정부 대응에 관한 지침의 마련이 필요함
- 법 제2장에서 정부는 외부(해외)에서 행해지는 행위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공급망 강화)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고 있음(제6조제1항)
 - 이를 위하여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방향, 시책, 기준, 중요물자의 지정, 자금조달, 지원업무 등 기본지침의 사항을 규정함
- 중요물자를 정의하고, 지정이 필요한 중요물자에 대한 기준을 정함(제7조)
 - 중요물자: 국민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물자(프로그램 포함)와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8) 각의는 대통령령의 국무회의에 준하는 내각제 국가에서 행정권 행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의결절차를 뜻함.

기기, 장치와 같은 물품 또는 프로그램(이하, '원재료등')⁹⁾

- 지정기준: ①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의존할 우려가 있어서 외국의 행위에 의해서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자 중 ② 해당 물자 혹은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등(이하, '물자등')의 생산기반 정비, 공급망 다변화, 비축·생산 기술의 도입·개발·개량 그 밖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③ 물자등의 사용 합리화, 대체물자의 개발, 그 밖의 해외 의존율의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요물자로 지정함
- 주무대신은 소관 부처의 해당 중요물자에 대한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제8조)
 - 개별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시책, 지원업무, 기금 및 집행기관 등에 관하여 정함

(2) 공급 확보 계획

- 중요물자 등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율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 후, 해당 계획이 대처방안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무대신이 판단하도록 함
- 이에 중요물자 등의 안정적 공급을 원하는 자(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지원¹⁰⁾을 신청할 수 있음(제9조제1항~제3항)
 - 필요한 중요물자의 품목, 안정적 확보 목표 및 내용, 실시 기간 및 체계, 확보에 필요한 금액 및 조달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
- 주무대신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 공급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함(제9조제4항)
 - 확보방안의 내용, 실시체계, 필요한 자금, 조달방법 등이 적절해야 함
 -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 해외 의존 경감 조치 등이 강구될 수 있어야 함
 - 확보방안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 정비
 - 동종 업계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 확보 계획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경쟁이 확보되어야 하고, 소비자와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함

9) 제1회 유식자 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요물자로 반도체,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한 광물자원,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등이 논의되었음. 經濟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有識者会議 サプライチェーン強靱化に関する検討会合 第一回資料, 2021.12.8 https://www.cas.go.jp/jp/seisaku/keizai_anzen_hosyohousei/dai2/siryou1.pdf(방문일: 2022.4.6)

10) 유식자회의에서 작성된 제안서에 의하면, 지원의 범위는 국내 생산기반 정비, 공급원의 다양화, 비축, 생산기술 개발·개량, 대체 제품 개발, 재활용 추진과 같은 포괄적인 활동에 대해 논의되었음. 經濟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有識者会議, 經濟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提言, 2022, p.11.

- 공급계획이 적절한 경우 주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 기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특정 중요물자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원기관(지원법인 및 지원 독립행정법인)에 통보(제9조 제6항)
- 공급 확보 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는 공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대신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정적 공급 확보 계획의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주무대신에게 보고해야 함

(3) 금융지원 : 일본정책금융공고법 특례

- 민간사업자가 작성한 계획에 대한 지원조치에 대해 재정지원이나 금융지원 등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공급 확보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JFC)¹¹⁾와 ‘지정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요물자의 원활한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함
 - JFC는 지정 금융기관에게, 지정 금융기관은 공급 확보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구조를 띠(제13조)
 - 주무대신은 공급 확보 촉진업무에 적합한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공시함 (제16조~제17조)
- 주무대신은 이러한 금융지원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JFC 및 지정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감독함
- 이 법은 JFC가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법」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보를 위한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JFC는 원활한 공급 확보 촉진을 위하여 지정 금융기관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함
 - 지정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의 기준에 관한 사항, 지정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및 공급 확보 촉진업무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정 금융기관 및 JFC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11) 일본정책금융공고(Japan Fiance Corporation: JFC)는 2008년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중앙정부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이다. JFC는 중소기업지원, 신용보증, 자산 유통화 등의 업무를 함. <https://www.jfc.go.jp/> (방문일: 2022.4.1.)

(4) 금융지원: 중소기업투자육성 주식회사법 및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특례

- 이 법은 중소기업이 중요물자의 공급 확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투자육성 주식회사(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¹²⁾’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제27조)
 - 중소기업자가 공급 확보 사업을 위해 자본금액이 3억엔을 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 및 해당 인수에 관련 주식의 보유
 - 중소기업자 중 자본금액이 3억엔을 넘는 주식회사가 공급 확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 신주예약권의 인수,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의 보유
- 이 법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신용보험지원¹³⁾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보장액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특례를 규정함(제28조)

(5) 중요물자 관련 시장 환경의 정비

- 이 법은 중요물자와 관련된 시장의 공정경쟁 및 보조금,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주무대신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급 확보 계획 승인을 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제29조)
- 주무대신은 소관 중요물자 등과 관련해서 직간접으로 해외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이 수입된 사실과, 해당 수입이 일본산업(동종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혹은 줄 우려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당국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0조제1항)
 - 또한, 중요물자에 대한 부당유매 및 덤핑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사당국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0조제2항 및 제3항)

12) 중소기업투자육성 주식회사는 1963년 「중소기업투자 육성 회사법(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에 따라 경제산업성이 설립하였으며, 비상장 회사를 지원하는 일본 최초의 벤처캐피탈로 평가되며 중소기업을 주되게 지원하고 있음. 村瀬 光正, 『日本の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 - 進化するビジネスモデル』, 21世紀政策研究所, 2001.12.

13) 일본의 신용보증제도는 벤처, R&D, 창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와 신용보험제도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를 ‘신용보완제도’라고 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신용보증협회로 구성된 ‘신용보증제도’와 신용보증협회가 중소기업금융공고에 대해 재보험을 실시하는 ‘신용보험제도’가 있음. 이준호, 「정책금융지원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p.76-78.

(6) 공급망 지원법인

- 주무대신은 공급망 확보지원을 위해 일정한 요건이 되는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기타 법인을 신청에 따라 공급망 지원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31조제1항)
 - 지원법인은 ① 회계적 및 기술적 능력과 ② 공급망 지원업무체계를 적절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③ 공급망업무 외의 업무가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등을 만족해야 함
- 공급망 지원법인은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함(제31조제3항)
 - ① 공급 확보 사업자가 공급 확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 ②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보급금을 지급하는 일, ③ 공급망에 대한 정보 수집, ④ 공급망 관련 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함
- 공급망 지원법인은 공급망 지원업무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공급망 지원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7) 독립행정법인의 지원

- 앞서 민간 중심의 공급망 지원법인과 함께, 중요물자별로 소관 행정기관을 지정하여 공급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 주무대신은 소관 독립행정법인 중 그 소관하는 사업에 관련된 중요물자의 공급 확보를 위한 지원행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독립행정법인은 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8) 특별 대책이 필요한 중요물자

- 주무장관은 앞서 제3절~제7절까지 조치로도 공급망 확보가 곤란한 경우 '특별 대책이 필요한 중요물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각총리대신, 재무대신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제44조제1항 및 제2항)
- 주무대신은 지정된 특별 중요물자와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에 대해서 비축 그 밖의 공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제44조제6항)
 - 주무대신은 효과적으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법인('시설위탁 관리자')에 조치에 필요한 시설(부지 포함)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제45조)

- 주무대신은 외부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따라 특별중요물자, 원재료 등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급증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큰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해당 중요물자 또는 원재료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양도, 대여, 또는 사용할 수 있음(제44조제8항)

3. 사회기반 업무의 안정적인 제공 (법 제3장)

(1) 사회기반업무기본지침

- 기간 인프라 사업은 국민생활이나 경제활동의 기반으로 그 안정적인 제공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기간 인프라 사업자의 자조 노력에 의한 대처와 더해 정부가 인프라 사업자에게 영업의 허가 등을 부여하고 규제·감독함으로써 인프라 사업자의 업무의 적절성과 설비의 도입이나 유지관리 등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법 제3장에서 정부는 특정 사회기반업무(인프라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기본지침을 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함(제49조제1항 및 제2항)

① 사회기반업무의 안정적인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방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포함), ② 사회기반 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사회기반 사업자에 대한 권고 및 명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④ 사회기반업무의 안정적인 제공의 확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⑤ 사회기반 업무의 안정적인 제공의 확보에 관해 필요한 사회기반 사업자와 그 외의 관계자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내각총리대신은 사회기반업무기본지침안을 작성할 때 사전에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 정보통신기술 및 기타 사회기반업무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듣고, 또한 사회기반업무 관련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제49조제4항)

(2) 사회기반 사업자의 지정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기반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는데,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음(제50조)
 - 국민생활이나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사업 중에서 인프라 업무의 안정적인 제공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① 국민의 생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것 또는 ② 국민생활 혹은 경제활동에 광범위하거나 대규모의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14개 분야를 지정하였으며, ①전기, ②가스, ③석유(에너지 분야), ④수도, ⑤정보통신, ⑥철도, ⑦해상운송, ⑧화물운송, ⑨항공, ⑩공항, ⑪금융, ⑫우편, ⑬방송, ⑭신용카드 등이 있으며, 이들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를 다시 세분화하였음

(2) 중요설비 도입 신고

- 사회기반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중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해 중요설비의 유지관리 또는 조작 설비가, 해외에서 행해지는 사회기반업무의 방해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제52조제1항)
 - 신고의 대상은 중요설비로 한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중요설비는 인프라 사업의 중심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서 그 기능이 정지 또는 저하될 경우 인프라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비임
 - 이 인프라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비 중에는 기간 인프라 사업에서 업무의 안정적인 제공에 직결하는 정보시스템¹⁴⁾도 포함됨
- ‘도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제52조제2항)
 - ① 중요설비 개요, ② 도입의 내용과 시기, 설비 공급자에 관한 사항, 특정 중요설비의 일부를 구성하는 설비, 기기, 장치 또는 프로그램 등으로 방해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③ 중요설비의 중요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유지관리 위탁의 내용 및 시기 또는 기간, 위탁 상대방에 관한 사항, 위탁 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재위탁에 관한 사항 등
- 신고를 한 사업자는 주무대신이 해당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동안 해당 도입이나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주무대신이 해당 도입의 규모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제52조제3항)
- 주무대신은 위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중요설비가 방해 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우려가 큰지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설비의 도입 및 유지관리를 중단할 기간을 신고일로부터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제52조제4항)
- 주무대신은 심사결과 해당 도입 등이 중요설비 방해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도입계획서의 변경 및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에 중요설비를 도입하거나 또는 해당 도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제52조제6항)

14) 예를 들어, 운영 정보, 중요 시설 보안 정보, 은행 예금 정보 등을 다루는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음.

- 제6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통지 또는 권고를 응낙하지 않거나 권고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권고에 관한 변경을 한 계획서를 주무장관에게 신고한 후 중요설비를 도입·유지관리를 하거나, 중요설비의 도입 혹은 유지관리의 위탁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제52조제10항)

(3) 중요설비 도입 후 권고 및 명령

- 주무대신은 사회기반 사업자가 신고 계획서에 따라 중요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한 후, 국제 정세의 변화 그 외의 사정의 변경에 따라, 해당 중요설비가 특정 방해 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기에 이르렀을 때는 해당 신고를 한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중요설비의 검사 또는 점검 실시, 중요설비의 유지관리 위탁 상대방의 변경 그 밖의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제55조)
- 주무대신은 제52조에 따른 권고 및 명령을 할 때는 사전에 내각총리대신 그 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협의해야 함

(4) 보고 및 검사

- 주무대신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회기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기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제58조제1항)
- 주무대신은 사업자 지정해제, 설비도입에 대한 권고·명령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사회기반 사업자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해당 사회기반 사업에 관해 질문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58조)

III. 경제안전보장추진법(2)

1. 첨단핵심기술의 개발지원 (법 제4장)

(1) 첨단핵심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 및 국가지원

- 주요국은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 대규모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등을 포함한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키는 안보위협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을 활용하여 정보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는 동시에 각국의 안전보장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 법 제4장에서 첨단핵심기술의 개발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자금 지원 등 실시함

[특정 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1.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2조제1항에 규정된 협의회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금의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제64조제1항에 규정된 조사연구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있어서 배려해야 할 사항
6. 전 호에 정하는 것 외,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필요한 사항

■ ‘특정 중요기술’의 의미

- 장래의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 유지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 중 해당 기술 혹은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정보가 외부에 부당하게 이용되었을 경우 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한 물자 혹은 서비스를 외부에 의존함으로써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해 이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제61조)
- 구체적으로 우주, 해양, 양자, AI,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특정 중요기술 상정

(2) 관민협의회 설치

- 연구개발 등에 의해 행해지는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함(제62조)
 - 국가의 지원자금으로 행해지는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해서, 그 자금을 교부하는 장관(연구개발장관)이 기본지침에 근거해, 개별 프로젝트마다 연구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를 설치하며, 지정기금(경제 안보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필수 설치
- 협의회는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성과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협의함

[협의회 협의 사항]

1. 해당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유용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해당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촉진을 위한 방책에 관한 사항
 3. 해당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내용 및 성과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해당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5. 전 호에 정하는 것 외, 해당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필요한 사항
-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유용한 정보로 구체적인 사회 구현의 이미지, 정부가 실시해 온 연구성과, 샘플링 데이터, 사이버 보안 사건·취약성 정보, 비공개로 계약 정보,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정부 기관의 동향 관련 정보 등¹⁵⁾
- 협의회 구성원
 - 연구개발 장관, 국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연구 대표자 및 종사자, 특정 중요기술 조사 연구기관 등
 -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그 외 필요한 대처 실시
 - 협의회 사무 관련 비밀 누설 금지
 - 협의회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무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되며(제62조제7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5조제1항제1호)

15) 経済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有識者会議, 経済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提言, 2022.

(2) 지정기금

- 중요기술연구개발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지정함(제63조)
 - 내각총리대신은 기금지정을 할 때 재무대신, 해당 지정기금에 관한 자금배분기관을 소관하는 장관, 그 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 지정기금협의회 조직
 - 지정기금소관장관은 내각총리대신과 공동으로 지정기금으로 행해지는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중 해당 연구개발 등을 대표하는 자, 해당 지정기금소관대신 및 내각총리대신으로 구성되는 지정기금협의회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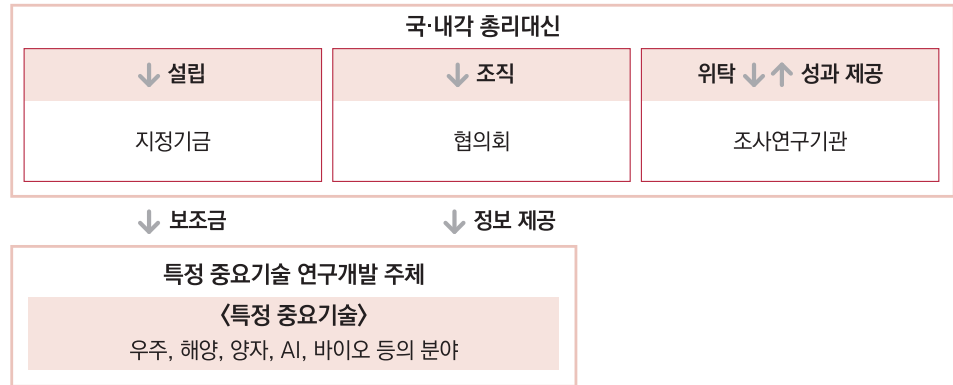
(3) 조사연구 기관 육성

-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를 특정핵심기술 연구기관에 위탁함(제64조)

[조사연구기관 선정 기준]

1. 첨단기술에 관한 내외의 사회경제정세 및 연구개발 동향의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능력
 2. 첨단기술에 관한 내외의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보관하는 능력
 3. 내외의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는 기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을 실시하는 기관 그 외의 내외의 관계 기관과 제휴하는 능력
 4.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적절히 실시하기에 충분한 능력
- 조사연구를 위탁받은 기관은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 특정 중요기술 조사연구기관의 임원, 종업원 또는 그에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위탁에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출 및 도용 금지

[그림 3] 관민 기술협력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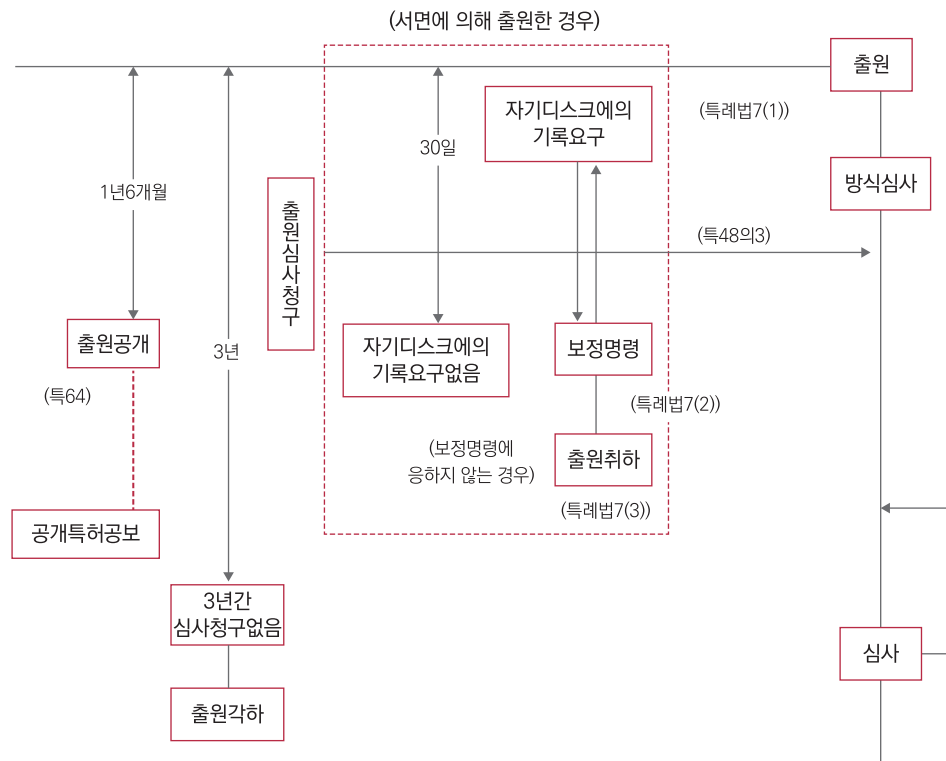


2. 비공개
특허출원 제도
(법 제5장)

(1) 특허출원의 비공개

- 일본의 특허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심사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발명이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조기 출원공개 청구가 이뤄지면 그 전에 공개하고 있음

[그림 4] 일본 특허출원의 공개¹⁶⁾



16) 「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일본)」, 특허청, 2015, p.102.

- 일본 정부는 외국의 상당수 국가들이 특허제도의 예외 조치로서 국방 관련 민감한 발명의 특허출원을 공개하지 않는 동시에 유출방지조치를 취하여 해당 발명이 외부의 위협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제도를 가진 반면, G20 국가 중 일본, 멕시코, 아르헨티나만이 이러한 민감한 발명의 특허출원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해당 발명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 정부는 「통합혁신전략 2020」(2020년 7월 각의결정)을 통해 혁신 촉진과 기술유출 방지를 조화·양립시키는 방향에서 비공개 특허출원 제도의 검토 추진 결정
- 법 제5장에서 정부가 출원공개의 특례 조치서, 특허 청구범위 또는 도면,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65조)
 - 기본지침에는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비공개 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보전지정 절차 등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명시

(2) 비공개 대상기술분야 심사 (1차 심사)

- 비공개로 하는 발명의 선정은 전체 출원발명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우선 특허청에서 비공개 대상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정형적 심사로 1차 심사(스크리닝) 실시
 - 핵기술, 무기 개발 등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기술¹⁷⁾과 같은 분야로 비공개 기술 대상 범위를 우선하여 한정¹⁸⁾

(3) 비공개 대상 적합 검토 (2차 심사)

- 발명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2차 심사, 즉 보전심사를 진행하는 2단계 심사 진행(제70조제1항)
 - 보전심사 시 다음의 사항 등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적용하여 판단
 - ①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의 정도
 - ② 발명을 비공개로 한 경우에 산업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17) 예를 들면, 핵개발로 이어지는 우라늄 농축기술과 미사일로 전용될 위험이 있는 로켓 기술 등을 들 수 있음.

18) 유식자회의에서 작성된 제언서에 따르면, 보전지정은 핵무기 개발 및 무기에만 사용되는 단일 이용 기술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하며, 이중 사용 기술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일본의 경제력이나 기술적 우위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보전지정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음. 經濟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有識者会議, 經濟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提言, 2022.2.1.

- 내각부는 심사에 있어 국가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의 협력을 얻고, 또한 국가 관련 기관에 협의함
- 특허출원 절차에 따라 명세서 등이 공개되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큰 발명이 포함될 수 있는 기술 분야의 경우 출원인이 보전심사 신청을 하거나 특허청장관이 직접 특허출원 관련 서류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제66조)
- 내각총리대신은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송부를 받았을 때는 당해 발명에 관한 정보의 보전(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보전심사)를 함(제67조제1항)
- 보전심사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의 직원 및 전문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되며(제67조제8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5조제1항제2호)¹⁹⁾
- 보전지정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보전심사 중인 발명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됨(제68조)
- 보전지정 전 출원인에게 특허출원 유지 여부 의사 확인을 위한 통지 및 답변 수리
 -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14일 이내에 출원 유지 여부를 결정(제67조제10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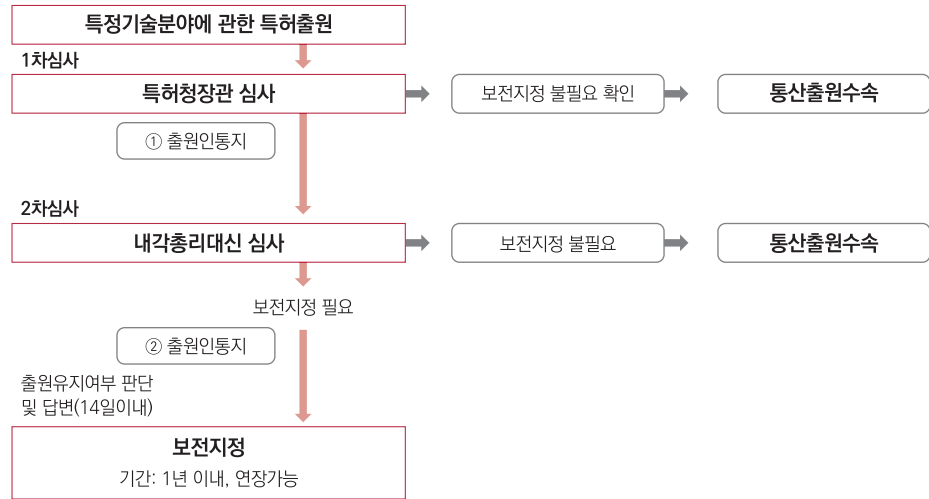
(4) 보전지정

- 보전 대상 발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 지정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이후에는 1년마다 연장의 필요 여부 판단(제70조제2항 및 제3항)
- 보전지정의 효과
 - 특허출원의 취하 금지(제72조)
 - 보전 대상 발명의 실시는 내각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실시(제73조)
 - 정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명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제74조)
 - 지정 발명의 특허 출원인에게 보전 대상 발명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관리하고 그 외 보전 대상 발명에 관한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제75조)

19) 일본 국외에서 동호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제95조제2항).

- 다른 사업자에게 보전 대상 발명에 관한 정보의 취급을 신규로 인정할 때는 미리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존 발명 공유 사업자의 보전 대상 발명에 관한 정보의 취급이 중단하거나 그 외 발명 공유 사업자에 대한 변동이 생겼을 때는 즉시 그 변동 내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제76조)

[그림 5] 특허출원 보전지정 절차



(5) 외국출원제한

- 특허청의 정형적 심사인 1차 심사로 분류되는 기술(핵기술, 무기 개발 등 군사 전용기술)에 대해서는 일본에 우선 출원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1국 출원 의무 규정하고 있음(제78조)
- 외국출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94조제1항)
- 1차 심사로 분류된 기술을 외국에 출원하려는 경우 특허청에 제1국 출원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제79조)

(6) 손실보상

- 보전 대상 발명에 대해 발명의 실시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 허가에 대한 조건의 부가로 일정한 제한을 받거나 그 외 보전지정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 통상 발생할 손실을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제80조)

IV. 국내 법제 시사점과 정책 제언

1. 국내 법제 및 비교분석

(1) 국내 경제안보 법제

- 근래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경제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공급망(supply chain), 핵심기술(critical technologies), 주요 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 등을 강화·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미국의 「혁신경쟁법(USICA)」, 「외국인 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혁신경쟁법안(USICA)」, 「미국경쟁법안(ACA)」, 중국의 「수출통제법」, 「반외국재법」, 프랑스의 「통화 및 재정법전」,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 등이 있음
-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영역별로 기존 법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입법화를 추진함
 - 대표적으로 2022년 2월 3일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라 함)과 향후 추진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²⁰⁾이 있음
 - 기존 ‘산업보안’²¹⁾ 관련 법제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산기술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에서 안보위해(危害)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국가핵심기술, 방산기술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 등 역할을 하고 있음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과 비교

1) 제정배경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해당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기술 및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20) 기획재정부는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제를 만들고, 기존 첨단산업 중간재·원자재 관리 외에 범용재 및 공급망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법적 대응체계를 세우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밝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2.1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958>> (방문일: 2022.4.23.)

21) 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이란 산업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보안법은 산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기술 및 경영상의 정보 등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함. 손승우 외 6인, 「산업보안법」, 케듀아이, 2021, p.25.

- 이 법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분쟁에서 비롯된 글로벌 경제안보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만큼 동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비교를 통하여 그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설치
 -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관련 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비롯하여 관련 정책추진과 제도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제9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과 관련 품목의 안정적 공급
 - 해당 기술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제11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함(제2조제1호)
 -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공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이 법에 따른 공급망 확보 대상품목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된 품목으로 한정됨(“22.5.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3개 분야)
- 수출 및 인수합병 통제
 -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전략기술 개발 및 전략산업 육성
 -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해당 특화단지의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 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및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의 특례를 규정함(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등 혁신발전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거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업이 시험·평가·검증 및 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3) 일본법과의 비교

- 경제안보 대응과 중소기업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과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모두 경제안보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과 공급망 등을 강화하여 기술패권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짐
 -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기금지원, 연구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중소기업 중심의 자금, 금융 등 지원책을 규정한 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개발, 특화단지, 예비타당성 특례, 기금, 규제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함
 - 양 법률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임
- 법 적용 범위와 거버넌스
 -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경제안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주요 공급망, 핵심기술뿐만 아니라 주요 인프라 및 비공개특허제도 등을 핵심적 사항으로 규율함
 - 이처럼 이 법은 범부처적 입법으로서 중요도와 광범위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수반인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주관하도록 함
 - 이에 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이에 기반을 둔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유출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 법에

다른 공급망도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음

- 일본법과 달리 주요 인프라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공급망의 범위에서도 기술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됨

● 공급망 강화 대상

-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중요물자의 정의와 그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즉 국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에 중요한 물자(예,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등)와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희토류, 니켈 등 광물자원), 부품, 설비, 기기, 장치 또는 프로그램을 ‘중요물자’로 지정하고, 일본 내 제조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에 생산 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직접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제7조)
 - 중요물자 지정에 있어서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의존할 우려가 있어서 해외의 공급중단 행위로 국민 생활이나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물자 중에서 해당 물자의 생산기반 정비, 공급망 다변화, 비축·생산 기술의 도입·개발·개량뿐만 아니라 대체물자의 개발, 사용 합리화 등 해외의존을 감소가 필요한지를 고려함
 - 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율을 존중하면서 효과적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이에 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로 정의하고 있음
 - 전략기술 지정에 있어서도 ①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②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③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④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⑤ 해당 기술이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
 - 일본법에 비하여 우리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 정의와 그 지정기준에 있어서 ‘경제안보적’ 특성과 고려가 다소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않음
 - 또한, 이 법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제10조에서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략기술 관련 품목’이 무엇인지 구체화하고 있지 않음²²⁾

22) 이 법 제28조에서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하나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전략기술 관련 품목에 소재·부품·장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핵심기술 보호 및 통제 방식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과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모두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개발,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보호 및 통제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 국가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민관협력을 양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법의 경우 미국 고등연구계획국(ARPA), 영국 고등연구발명국(ARIA) 등과 같은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음
 -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AI, 양자기술, 핵기술이나 첨단 무기 기술개발 등 국익에 관련되는 특허를 비공개로 하고, 누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민간 특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되 특허를 공개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로 수입 등을 국가가 보상함
 - 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통제와 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의 사전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허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 즉 전략기술보유자가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12조 및 제13조)
 - 나아가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이직관리 및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제도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함
 -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처벌을 규정함

2. 시사점과 정책 제언²³⁾

(1) 경제안보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입법체계 정비

- 글로벌 경제안보 강화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들이 추진되어 있으나 자칫 무분별하고 산발적인 입법은 과잉중복 규제로 이어져 기업부담은 물론 해외투자 위축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국내 경제안보 관련 법률은 공급망, 산업기술·방산기술·중소기업기술 보호, 국가첨단 전략기술, 주요 인프라, 전략물자, 연구개발, 특허제도, 사이버보안, 외국인투자 제한 등

23) 경제안보 관련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위하여 이 분야 전문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였음.

개별 영역별로 통일된 국가적 목표와 체계 없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중복적·개별적으로 시기적·상황적 흐름과 필요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진흥법과 규제법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데, 후자는 「산업기술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대상기술, 지정기준, 규제방식 등 상당 부분이 중복됨
-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내각 출범과 동시에 국가 아젠다로 추진해온 ‘경제안전전략’을 범부처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함
 - 이 법은 경제안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방침을 정한 뒤 공급망 강화,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보안, 비공개특허제도 등을 상호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체계적인 경제안보 정책추진에 용이할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중요하게도 이 법은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여 강력한 리더십에 기반을 두고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점도 시사점을 줌
-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안보를 총리실 산하 신흥안보위원회(ESC)에 맡기되 위기 징후 포착 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개입하도록 하고 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비서관을 두도록 구상 중임
 - 우리나라 경제안보 법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산업안보 법제에 더해 추가적인 입법으로 구성되고 개별 영역에서 각기 맡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일적인 틀 아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의 정비가 우선 전제될 필요가 있음

(2) ‘경제안보’ 개념 정립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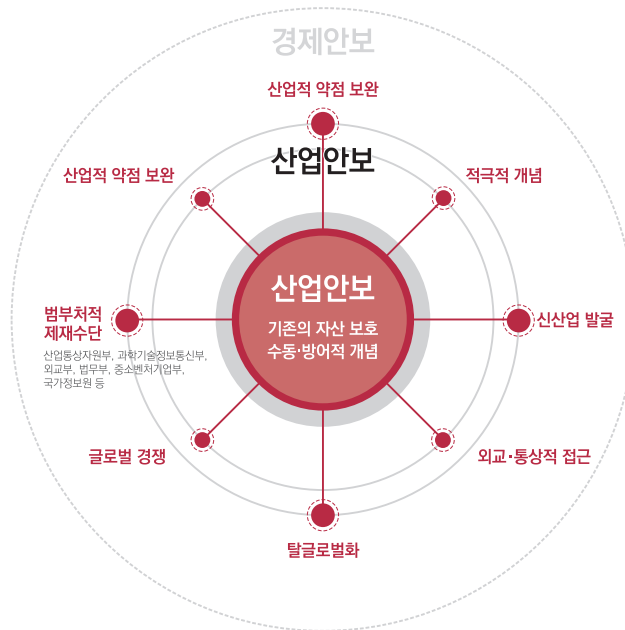
- 최근 들어 ‘경제안보’ 용어가 언론을 통해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정확한 경제안보의 개념과 접근 방안 등을 설명해 놓은 연구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움
 - 개별 영역별로 경제안보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통화스와프, 공급망, 과학기술, 외교통상, 기술보호 등이 있음
- 경제안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이뤄져야 함
- 경제안보는 산업정책, 공급망, 연구개발(R&D), M&A, 핵심인력, 외교, 통상, 수출통제,

정보수집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적·전방위적으로 운용하는 개념이므로 종합적인 접근체계가 필요함

- 근접한 개념으로서 ‘산업보안’은 산업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수동적·수비적 개념에 중심을 둔 반면, ‘경제안보’는 중요자산 보호의 차원을 넘어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개념임²⁴⁾

‘산업경제안보’ 개념 : 기존의 수동적·수비적 ‘산업보안’ 개념을 넘어 산업정책, 공급망, 연구개발(R&D), M&A, 핵심인력, 외교, 통상, 수출통제, 정보수집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적·전방위적으로 운용하여 산업경제적 위협을 예측·대응하고 미래성장 전략수립을 통하여 글로벌 국가경쟁력과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높이는 것²⁵⁾

[그림 6] 경제안보 개념



※ 출처 : 손승우, “新 안보위협과 산업보안 역할변화”, 2020 온라인 학술대회 및 창의설계대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0

- 경제안보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급망, 연구개발, 외교통상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그 시작점은 ‘해외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판단과 전략수립에 있음

- 정보수집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양자컴퓨터 등 미래 성장 분야를 지정하고, 이 분야의 전 세계 기술정보 지도를 마련함

24) 손승우, 「[뉴웨이브] 경제안보시대, '성장전략'의 조건」, 아시아경제, 2022.

25) 손승우, “국가난제 대응을 위한 산업안보 개념의 정립”, 「국제 경제갈등과 과학기술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보안의 역할」, 산업보안연구학회 세미나, 2019; 유석현 외 6인, “산업안보 관점의 소재·부품·장비 대응전략”, 「국가난제 전략보고서 Vol.1」,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 p.13.

- 세계적으로 매년 300만개의 특허가 나오는데 첨단기술은 대부분 특허로 보호되므로 특허는 공개된 훌륭한 기술정보를 활용하면, 경쟁국의 핵심기술, 연구자, 산업판도, 특허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국정원·외교부·산업부 등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하여 경제안보 전략수립을 수립함²⁶⁾
- 이러한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대체불가의 히든기술 개발, 동맹국 공동대응, 공급망 확보, 특허회피전략, 사이버안보, 핵심인력 확보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

(3) 비밀특허제도와 인프라 보안강화

-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국익에 관련되는 핵심특허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²⁷⁾에 한하여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경제안보 강화를 위하여 그 대상을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해외출원 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비밀특허제도를 적용하여 사전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함
- 이와 함께, 미국이 국가경제안보를 이유로 도입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에 대한 국내 우선 출원제도²⁸⁾를 우리나라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 등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²⁹⁾
- 미국, 중국, 영국, 독일 등은 자국의 주요 기술보호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내 특허에 대해서 해외출원 시에 우선적으로 정부 당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출원 제한 발명을 국방기술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는 기술에도 적용하고 있음
- 국가의 지원을 받은 기술 중에서 해외 출원 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함

26) 아시아경제, 김용래 특허정장 "기술패권 시대, 지식재산이 경쟁력...특허청 소임 다할 것", 2022.

27) 특허법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이하 생략 -

28) 미국 「특허법」 제181조~제188조(35 U.S.C. § 181~188)에서 ‘특정발명의 비밀유지와 외국에서의 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9)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위하여, 이동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해외 특허출원 허가제도’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한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도입하고 있는 14개 주요 인프라에 대한 중요설비에 대해 사이버 공격 위험 등이 없는지 설비나 관리체제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2018년 美 의회는 화웨이 네트워크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됐다고 발표하였고, 美 정부는 동맹국과 함께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압박하였음. 이에 일본도 이번 법을 통해 주요 인프라 시설에서 중국 제품을 배제할 것으로 예상함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에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한해서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하도록만 되어 있음



참고문헌

[국내문헌]

손승우, “국가난제 대응을 위한 산업안보 개념의 정립”, 「국제 경제갈등과 과학기술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보안의 역할」, 산업보안연구학회 세미나, 2019

「[뉴웨이브]경제안보시대, '성장전략'의 조건」, 아시아경제, 2022

“新 안보위협과 산업보안 역할변화”, 2020 온라인 학술대회 및 창의설계대회, 한국산업보안 연구학회, 2020

손승우 외 6인, 「산업보안법」, 케듀아이, 2021

유석현 외 6인, “산업안보 관점의 소재·부품·장비 대응전략”, 「국가난제 전략보고서」 Vol.1,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

이동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해외 특허출원 허가제도’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이준호, 「정책금융지원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20,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21

「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일본)」, 특허청, 2015

아시아경제, 김용래 특허청장 "기술패권 시대, 지식재산이 경쟁력...특허청 소임 다할 것", 2022.2.18.

[외국문헌]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経済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有識者会議 サプライチェーン強靱化に関する検討会合 第一回資料, 2021

經濟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有識者会議, 經濟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提言, 2022

經濟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法律案・理由

村瀬 光正, 日本の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 —進化するビジネスモデル, 21世紀政策研究所, 2001

大澤 淳, 經濟安全保障の現在地 かなり先細った推進法案, WEDGE Infinity, 2022

産経新聞, 經濟安保法案が衆院通過 立民など野党も賛成, 2022

[웹사이트]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https://www.cas.go.jp/index.html>)

일본 정책금융공고(<https://www.jfc.go.jp>)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GLOBAL LEGAL ISSUES

일본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현안 분석

권세진
서강대 대우교수
디지털정책연구소장



발행일 2022. 5. 31.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861-0300 Fax. 044)868-9913

